

##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(검사면제) 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비료수입업 신고번호	상호 또는 법인명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수입비료	종류 및 명칭	HS번호(품목번호)
	도착일	선하증권(Bill of Lading) 물량 kg
		선하증권(Bill of Lading) 번호
	도착항	수출국
	용도	
	원료명 및 배합비율	

시료채취 장소	
------------	--

「비료관리법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(검사면제)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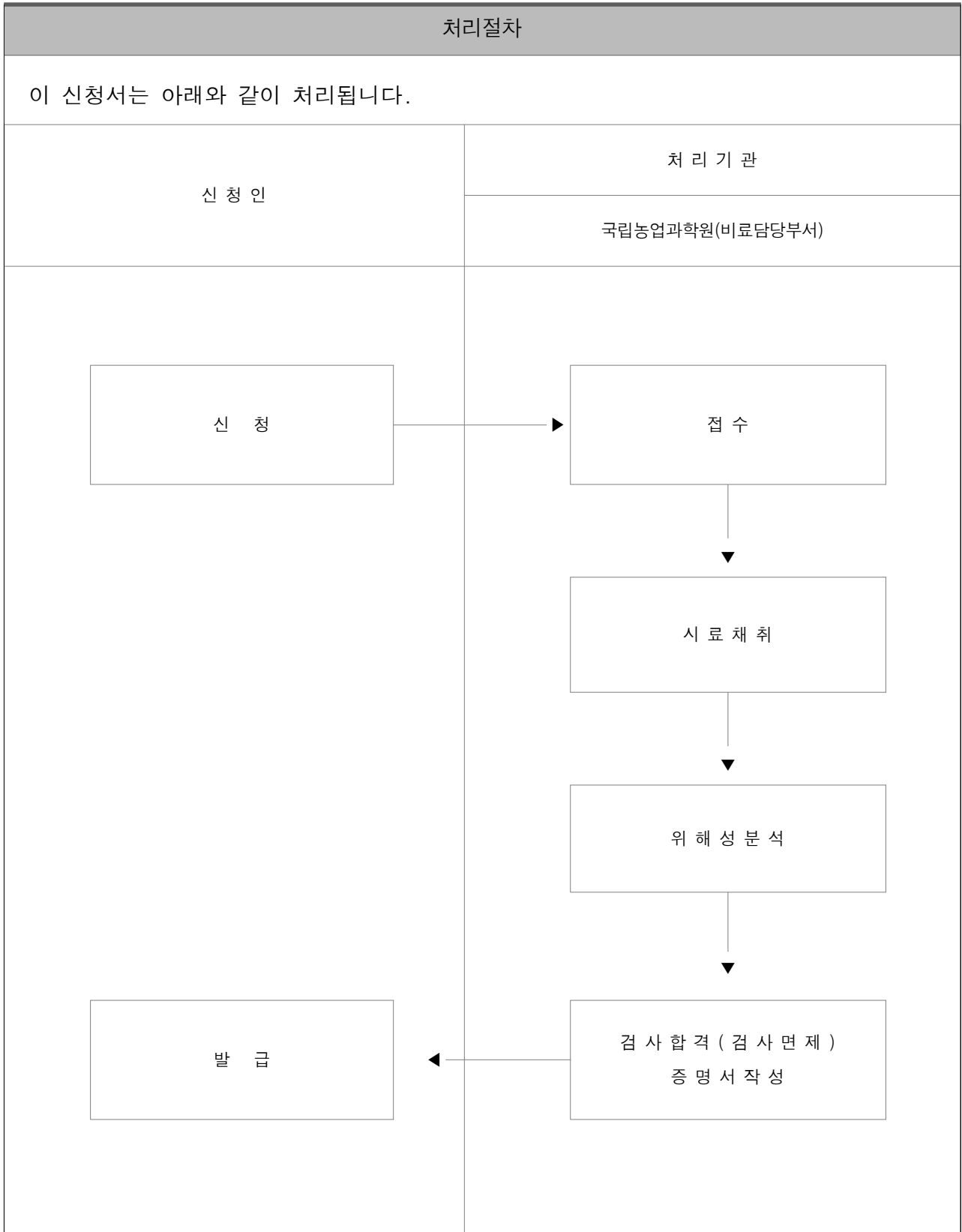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업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2. 수출국의 정부기관(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합니다)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1부(위해성검사면제 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

비고: 수출국의 정부기관(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)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및 위해성분석을 생략한다.